201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2012. 3.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 차

I. 2011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개요 ····· 1
1. 재허가 대상 ····· 2
2. 추진경과 ····· 2
3.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 2
4.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3
5. 심사평가 방안 ····· 6

II. 재허가 신청 안내공고 ····· 8
1. 재허가 신청 안내 공문 ····· 9

III. 심사 기본방향 및 심사항목 ····· 10
1. 심사평가 기본방향 ····· 11
2. 심사평가 방법 ····· 11
3. 세부심사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12

IV. 재허가심사위원회 ····· 13
1. 심사위원 명단 ····· 14
2.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14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 15
4.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 17
5. 심사위원회 심사총평 ····· 17
6.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 20

V. 방송국 기술심사 ····· **21**

1.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심사결과 ····· 22

VI.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26**

1.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2011.11.23) 의결내용 ····· 27

부록 ····· **28**

1. 2011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안내
2. 시청자 의견 접수 관련 공문
3.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I. 2011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개요

1. 재허가 대상

o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운영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2011년 12월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5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5개 지상파방송국

구분	사업자명	방송국명
지상파라디오	(주)경인방송	경인FM
	(주)제주방송	제주FM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FM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FM
	소계 : 5개 사업자	**5개 방송국**

2. 추진경과

o 2011년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 ’11.6.22.

o 재허가 신청서 접수 : ’11.6.30. (신청서류 보정 : ’11.8.31.~9.20.)

o 청취자 의견청취 : ’11.8.18.~9.14. (접수내용 없음)

o 재허가 대상 5개 사업자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 : ’11.10.13.~14.

o 심사위원회 운영 : ‘11.11.15.～11.17.(3일)

3.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o 지난 허가 및 재허가 기간에 대한 방송사업 실적과 차기 재허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심사

o 방송법 심사기준 및 방송법령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반영하는 내실있는 심사

o 현장방문을 통한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등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4.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목 적

o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목 적

o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 심사위원회 구성

(가) 구성원칙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나) 구성방안 (9인)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9)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언론・미디어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분야(2)	경영・경제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방송・전파 등 관련학과 교수・연구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시청자・소비자분야 종사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다) 위촉기준

o 방송, 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o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라) 결격사유

o 2009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이나 구성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100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o 2009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이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o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사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마) 심사위원회 구성

o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o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다. 심사위원회 운영

(가) 기본 방향

o 재허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허가 신청서류 검토 결과와 의견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o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나) 심사위원회의 직무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o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및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o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o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다) 의견청취

o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o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o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o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5. 심사평가 방안

가. 평가원칙

o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나. 평가지표

o 계　량 :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 등에 따른 평가점수로 반영

o 비계량 :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다.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75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5. 경영의 적정성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8. 청취자의 권익 보호 (청취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평가 포함)	75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라.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II. 재허가 신청안내 공고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1년도 재허가 신청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 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11.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허가 신청 대상 : 2011.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국
나. 신청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다.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라. 제출처 : (우)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마.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 신청서류 작성양식 및 신청요령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메뉴전체보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중 「2011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안내」 및 「2011년도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신청안내」에서 첨부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부록1] 2011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안내 참조

III. 심사 기본방향 및 심사항목

1. 심사평가 기본방향

o 지난 허가 및 재허가 기간에 대한 방송사업 실적과 차기 재허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심사

o 방송법 심사기준 및 방송법령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반영하는 내실있는 심사

o 현장방문을 통한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등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2. 심사평가 방법

o 평가원칙

-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o 평가지표

- 계　량 :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 등에 따른 평가점수로 반영

- 비계량 :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3. 세부심사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평가 항목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400점	계량	방송 평가 점수(500점 만점) 환산 반영
2. 방송 분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150점)	100점	비계량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 및 현황
	50점	비계량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감점	계량	관계 법령 위반 사례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의 적정성(50점)	30점	비계량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
	20점	비계량	향후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정성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75점)	45점	비계량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적정성
	30점	비계량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적정성
5. 경영의 적정성(50점)	30점	비계량	경영계획 이행실적
	20점	비계량	경영계획의 적정성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50)	20점	계량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15점	비계량	추정 재무제표 및 수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15점	비계량	방송시설 투자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50점)	30점	비계량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20점	비계량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8. 청취자의 권익보호(75점)	50점	비계량	청취자 권익보호 관련 이행실적
	25점	비계량	청취자 권익실현 계획 적정성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100점)	100점	비계량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사례	감점	계량	시정명령 건수별 감점 시정명령 이행여부 평가
계	1000		

IV. 재허가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 명단

분 야	성 명	현 직	비 고
위원장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분야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영·회계 분야	전현수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안재현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기술 분야	이용태	ETRI 책임연구원	
법률 분야	오승돈	한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청자 분야	조연하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간사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2.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o 심사 기간 : ’11.11.15 ~ ’11.11.17(총 3일간)

구분	일 정	심 사 내 용
1차(서류심사)	’11.11.15(화)	허가신청서 검토 및 세부심사기준 확정
2차(청문심사)	’11.11.16(수)	신청인 의견청취
3차(평가심사)	’11.11.17(목)	심사평가서 작성 등

o 심사 장소 : 방통위 14층 회의실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가. 의견청취 대상 사업자 선정

o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허가 대상 사업자 중 아래와 같이 5개 사업자로부터 11월 16일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함

나. 참석대상자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다. 청취 순서

일자	주요 내용
오전	o 주식회사 경인방송(경인 FM) o 주식회사 제주방송(제주 FM)
오후	o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영어 FM) o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부산영어 FM) o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광주영어 FM)

라. 참석자 현황

출석시간	방송사명	성명	직위	비고
10:00	경인방송	권혁철	대표이사	
		장우식	편성책임자	
		곽창근	최다액출자자	(주)평안산업 대표
		노종철	총무부장	배석자
11:00	제주방송	김양수	대표이사	
		정효성	편성책임자	
		이준희	최다액출자자	(주)한주홀딩스코리아 상무
		양종현	기술국장	배석자
		채병수	경영국장	배석자
14:00	국제방송교류재단	손지애	대표이사	
		심원필	편성책임자	
		김영종	라디오편성제작팀장	배석자
		송시혁	라디오편성제작팀PD	배석자
		김덕환	방송기술팀라디오기술 파트장	배석자
		최성배	기획예산팀장	배석자
		윤형섭	기획예산팀 예산담당	배석자
15:00	부산영어방송	이명식	방송본부장	대표자 수임인
		유정임	편성제작팀장	배석자
16:00	광주영어방송	김원욱	사장	대표자 수임인
		김형주	편성책임자	
		전세환	경영기획부 사원	배석자

4.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가. 의견청취 개요

o 근　　거 :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4항

o 공고방법 : 관보 및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2011. 8. 18)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안내방송(음성안내)

o 접수기간 : ’11.8.18.~9.14., 4주간

o 접수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나. 의견청취 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위원회 심사총평

2011년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경인방송 등 5개 법인에 대한 재허가 신청서 검토 및 의견청취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가. 종합소견

o 디지털 전환, 유사라디오방송서비스 등장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콘텐츠 제작 및 시설투자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o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기본이 되는 청취행태 조사 등 타겟청취자 및 청취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미흡함

o 영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경우, 지역성 구현과 지역민 참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고, 컨텐츠 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협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o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중국어, 일본어 등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방송실시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재허가 조건 부과(안)

o 제주방송은 사외이사 운영 등 경영투명성 보장 이행계획을 2011년 12월까지 제출하고 매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2010년 재허가 시 제주방송 권고사항 중 금번 재허가심사시 문제가 된 사외이사 부분을 권고사항에서 조건으로 강화하여 부과

< 2010년 재허가 권고사항(지역민방 공통) >

·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영의 투명성 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할 것
  -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제도 강화
  -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 방송전문경영인(사장) 제도 도입 · 유지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서비스 강화에 노력할 것

o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공통조건

- 청취자위원회 구성시 외국인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구성할 것

-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비영어 프로그램은 제외)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다. 권고사항(안)

o 공통 권고사항

-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

-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방송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정기적인 청취자 청취행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청취자 불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방송편성·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o 아리랑, 광주영어, 부산영어방송 공통 권고사항

- 방송권역내 거주(체류) 외국인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생활정보 방송을 제공하되,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

- 영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간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방송품질 향상과 재원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o 광주영어방송과 부산영어방송은 방송권역내 생활권이 공유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청취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o 경인방송은 과도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o 아리랑 제주방송은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활성화와 제주를 방문하거나 체류중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6.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방송사	경인방송 (경인FM)	제주방송 (제주FM)	아리랑방송 (아리랑제주FM)	광주영어방송 (광주영어FM)	부산영어방송 (부산영어FM)
심사점수 (점)	747.81	671.42	718.41	708.18	731.68

※ 총 1000점 만점

V. 방송국 기술심사

1. 재허가 심사대상

사업자명	방송국명	대표자	주파수	출력	송신소
(주)경인방송	경인FM	권혁철 대표	90.7㎒	1㎾	수봉산
(주)제주방송	제주FM	김양수 대표	101.5㎒	3㎾	견월악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	손지애 사장	88.7㎒	3㎾	견월악
(재)광주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FM	강운태 광주시장	98.7㎒	1㎾	무등산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FM	고윤환 부산부시장	90.5㎒	1㎾	황령산

2. 제출서류

o 재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및 시설설치계획서의 첨부도면 등 제출

구비서류	첨부도면
⑴ 방송국재허가신청서 1부	⑴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⑵ 허가증 사본 1부	⑵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⑶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⑶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⑷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⑷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⑸ 공중선계 구성약도
⑹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1부	⑹ 송신공중선 지향특성도
⑺ 시설설치계획서 1부	⑺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 방송국 재허가 관련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8조(재허가)에 의해 방송국 재허가는 개설허가에 준하여 검토

※ 방송국 개설허가 관련법령 : 전파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8조 등

3. 심사내용

□ 기초심사(서류심사 등)

o 법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전파법 제20조)

- 방송법 제18조 및 전파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및 검토는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 통합처리

o 허가신청 수수료 납입여부(전파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95조)

- 방송사업자별 수수료 : 지상파FM방송국 87,000원 납입 완료

o 재허가신청서, 구비서류 및 첨부도면 검토(전파법시행령 제31조)

-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등 재허가 신청 구비서류를 관련 규정에 알맞게 제출

□ 방송국 개설기준 심사

o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충족 여부(전파법 제21조)

심 사 내 용	검 토 결 과
·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주파수 지정 가능 - 기 허가받아 방송주파수로 타 방송국과 혼신 없이 운용가능
·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기술기준에 적합 - 최초 허가 후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무선종사자의 배치가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전파법 제71조)에 적합 - 무선종사자 3명 지정 : 송신소에 자동화시설이 설치되어 1명, 연주소 2명

o 무선국 개설조건 충족 여부(전파법 제20조의2)

심사내용	검토결과
· 방송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	· 방송사항이 방송서비스를 위한 것이며 개설목적이 지상파방송업무에 적합함
· 개설목적 · 방송사항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 기 허가받아 방송중이며, 법령에 적합함
·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출력) 사용여부	· 기 허가받아 운용중인 방송국으로 타 방송국에 혼신영향 없으며, 방송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적정 출력임
· 인명 · 재산 및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기존 방송시설에 설치 · 운용함으로 인명 · 재산 등에 지장을 주지 않음
· 현재 허가 받아 운용중인 다른 무선국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기존 운용중인 타 무선국과의 혼신영향 없음

o 방송국 개설허가 충족 여부(전파법시행령 제55조)

심사내용	검토결과
· 연주소 시설 보유 여부	· 방송사에서 제출한 연주장치 및 조정장치의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상파방송(FM)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연주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방송국의 시설 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 기 허가 받아 방송중인 방송시설로 지속적인 방송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방송국 운용의 기술적 능력 보유 여부	·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설허가 이후 3년간 방송국을 운영 중임

4. 심사결과

o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어,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관사항으로 명기하여 허가

①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②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

③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VI.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2011.11.23.) 의결내용

○ 2011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식회사 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

【 재허가 조건 】

구분	부과 내용
공통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제주방송	・사외이사 운영 등 경영투명성 보장 이행계획을 2011년 12월까지 제출하고 매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광주영어 부산영어	・청취자위원회 구성시 외국인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구성할 것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비영어 프로그램은 제외)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재허가 권고사항 】

구분	부과 내용
공통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방송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정기적인 청취자 청취행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청취자 불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방송편성·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리랑 광주영어 부산영어	·방송권역내 거주(체류) 외국인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생활정보방송을 제공하되,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 ・영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간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방송품질 향상과 재원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광주영어 부산영어	・방송권역내 생활권이 공유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청취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경인방송	・과도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아리랑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활성화와 제주를 방문하거나 체류중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제주FM 라디오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TV방송국과 통일을 위해 2년으로 한다.

부 록

[부록 1]

2011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신청안내

2011. 6.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재허가 계획(개요) ····· 1

1.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 2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 2
3. 재허가 여부 결정 및 방송국 허가 ····· 2
4. 추진일정 ····· 3
5. 유의사항 ····· 3

Ⅱ. 재허가 심사 ····· 4

1. 심사방향 ····· 5
2. 심사절차 개괄 ····· 5
3. 심사항목 및 배점 ····· 7

Ⅲ.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 8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 9
2. 작성 및 제출요령 ····· 10

Ⅳ.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11

Ⅴ. 첨부 : 신청서류 작성양식 ····· 54

Ⅰ. 재허가 계획 (개요)

I. 재허가 계획(개요)

1.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o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운영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전파법시행령 제27조제2호다목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하여는 본 재허가 계획과 별개로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함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월 전

나.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다. 제출처 : (우)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02-750-2434, schong@kcc.go.kr)

3. 재허가 여부 결정 및 방송국 허가

가.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나. 방송국 허가

o 재허가 심사평가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
  -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게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 재허가
  - 재허가 거부 대상 사업자에게는 재허가 거부사유 등 그 결과를 통보

4. 추진일정

일 정	주요내용	비고
6월 말	o 재허가 신청서류 접수	
7월～8월	o 재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서류 보정 o 시청자의견 수렴 -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서 방송을 통해 공지 o 방송국 기술심사	미제출서류 및 보완사항 통보
9월～10월	o 방송국 기술심사(계속) o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의견청취 포함
11월～12월	o 재허가 의결 o 방송국 허가증 교부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은 청취자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5. 유의사항

o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o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o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Ⅱ. 재허가 심사

Ⅱ. 재허가 심사

1. 심사방향

o 직전 허가 및 재허가 기간에 대한 방송사업 실적과 차기 재허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심사

o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사항 및 방송법령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반영하는 내실있는 심사

o 현장방문을 통한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등 방송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2. 심사절차 개괄

가.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나. 시청자 의견 수렴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은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방송을 통해 공지

다. 신청서류 보정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라.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마.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바. 의견청취

- 청취대상 :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

-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3인)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사.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자.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 점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4.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75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5. 경영의 적정성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7.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8. 청취자의 권익 보호 (청취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평가 포함)	75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Ⅲ.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가.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 방송국재허가신청서
③ 재허가대상 방송국 목록
④ 서약서
⑤ 일반현황
⑥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⑦ 방송국 허가증 사본
⑧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⑨ 주간기본편성표
⑩ 요약문
⑪ 첨부서류(감사보고서 등)

※ "⑩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나. 제출 부수 - 제본서류 19부 및 원본내용 포함 CD 2개 및 첨부서류

구분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3	1	서류 4부 + CD 1개 제출
보정 후 재접수시	원본 보정	15	1	사본 15부 + CD 1개 추가 제출
계	**1**	**18**	**2**	**총 서류 19부 및 CD 2개 제출**

주[1])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에 편철)
-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원본에 편철)
- 2008년, 2009년, 2010년 감사보고서 각 2부

주[2]) 기타 부속서류가 있는 경우, 원본 1부와 사본 2부

주[3]) 방송국 허가증 등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주[4]) 원본 보정은 원본제출자료 이외의 보완 자료만 추가

2. 작성 및 제출요령

o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o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o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o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o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o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연주소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o 첨부 재허가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방송국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o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계획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다만, 신규 허가나 재허가를 받은 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Ⅳ.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Ⅰ. 방송국재허가신청서

※ 재허가신청서는「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허가사항

※ 사업종류 : 지상파방송사업으로 기재하고 괄호( ) 안에 허가받은 방송국의 매체를 기재(TV, DTV, FM, 표준FM, AM, 단파)

3.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Ⅴ.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4.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Ⅴ.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Ⅱ.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 만료일	방송국 명칭	매체	소재지		방송 사항	방송구역		운용허 용시간	주파수	출력	비고
					연주소	송신소		일원	일부				

※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소재지는 '송신소(방송국)'와 '연주소'로 구분하여 해당 주소지를 기재

※ 매체 : '1. 재허가 신청 현황'에서 제시한 매체구분 유형을 기재

예) TV, DTV, AM, FM, 표준FM, 단파 등

Ⅲ. 서약서

※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

Ⅳ. 일반현황

1. 개요

※ 방송사(방송국)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간략하게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방송국 허가현황

사업자명	매체 구분													
	방송국							방송보조국						합계
	TV	FM	표준 FM	AM	단파	DTV	소계	TV 중계	FM 중계	표준 FM 중계	AM 중계	DTV 중계	소계	

※ 방송국은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연주소와 송신소, 방송보조국은 중계소와 간이중계소 포함

※ 금년 재허가 대상뿐 아니라 허가받은 모든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현황을 작성

5. 법인현황

※ 표에 맞게 해당내용을 작성하되, 주주현황은 5대 주주까지 기재

Ⅴ.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행정처분 현황 (2009.1.1 ~)

※ ‘11.05.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허가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심의제재, 행정처분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가. 시정명령(불이행) 현황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나. 심의제재 현황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0조제0항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다.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 현황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라.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사례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가.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이행실적 (2009. 1. 1 ~ 2011. 5. 31)

방송국명	허가 ·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허가 · 재허가시 공적책임 등 강화계획

※ 허가 ·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공익성 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2.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제고 실적 또는 훼손사례

※ 직전 허가 ·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공익성 강화 계획 이외에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과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각 항에 근거하여 해당사항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다. 각종 수상실적

순번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라.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o 총괄표 (단위 : 분, %)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방송시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			%			
합계									

o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마. 자체심의제도 운영현황

마-1. 각 방송사업자별 자체심의제도 운영현황

※ 자체심의 조직, 인원, 심의절차 등 구체적으로 작성

마-2. 재허가 기간동안 자체심의 실적 : 별첨으로 제출

※ 2009. 1. 1 ~ 2011. 5. 31까지 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실현계획 (2012.1.1~2016.12.31)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작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가. 편성기획 및 제작계획 이행내용 (2009.1.1 ~ 2011.5.31)

가-1.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 이행실적

허가·재허가신청시 제출한 편성의 기본방향	구체적 편성내용 (이행결과)	비고

※ 직전 허가·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편성의 기본방향 내용과 구체적 편성내용(이행결과)을 기재

가-2.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허가·재허가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계획	이행실적		비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 직전 허가·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명과 그 프로그램의 방송일시, 기획의도 및 개요를 기재

가-3.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실적 및 계획

가-3-1.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 방송시간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가-3-2.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보도	시간(분)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국악, 교통 등)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주된방송 분야名	시간(분)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비율(%)									
	기타 방송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 지역방송국의 경우, 본사 또는 제휴사의 프로그램 Relay 편성된 프로그램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외부구입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교양・오락의 편성시간을 기입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가-3-3.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단위 : 천원)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비율		비용 (증감)	비율		비용 (증감)	비율		비용 (증감)
			계획	실적 (증감)		계획	실적 (증감)		계획	실적 (증감)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 비율과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비용은 '4. 경영실적 및 계획, 가-3. 분야별 투자실적' 중 '(1)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실적' 금액과 일치해야 함

나.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편성계획 (2012. 1. 1 ~ 2016. 12 31)

나-1.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나-2.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

방송편성일자	프로그램명	구분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을 양식에 맞게 기재

나-3.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계획

나-3-1. 자체편성 방송비율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 방송시간과 비율을 작성

나-3-2.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국악, 교통 등)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된방송 분야名( )	시간(분)					
		비율(%)					
	기타 방송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방송	시간(분)					
		비율(%)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나-3-3.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단위 : 천원)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 비율과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비용은 '4. 경영실적 및 계획, 나-2. 분야별 투자계획' 중 '(1)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금액과 일치해야 함

4. 지역사회 발전

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수요 검토 등

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2009.1.1 ~ 2011.5.31)

o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5월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캠페인・행사・기부 등 지역사회 및 문화발전 기여 건수								
연도별 지원금								

o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참여내용	지원금	비고
합 계							

다. 지역사회 발전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2009.1.1 ~ 2011.5.31)

o 총괄표 (단위 : 분, %)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방송시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재허가방송국명		%		%		
합 계						

o 세부내역

구 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총 방송시간 합계					

라.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

o

5. 경영실적 및 계획

가. 재허가 기간동안 경영실적

가-1.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가-1-1. 직급별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임원	일반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가-1-2.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 (2011.05.31. 기준)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합계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 임원(대표이사 포함),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등으로 구분

※ 방송직에 계약직 및 파견직이 있는 경우, ( )로 별도 표시하여 중복이 없도록 기재
예 : 아나운서 4명 중 1명이 계약직인 경우, 3+(1)로 표기

가-1-3. 내부 조직도(2011.5.31. 기준)

조직도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가-2. 허가・재허가시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대비 실적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2-1. 직전 허가·재허가시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가-2-2. 이행실적

가-2-3. 인력운영 실적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가-2-4. 재허가대상 방송국의 재허가 기간 신규채용현황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가-3. 분야별 투자실적

가-3-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09년			2010년			'09~'10년계		2011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			%				
합 계										

※ 2011년의 경우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실적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1조제2항제1호(방송제작비)**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및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제작비용을 말한다. 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용은 제외한다.

예) 외주제작비, 출연료, 문예비, 효과료, 취재비 등

가-3-2.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연도 / 유형	2009년			2010년			'09~'10년계		2011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가-3-3.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가-3-4.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09년			2010년			'09~'10년계		2011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가-3-5. 연구개발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 방법은 「자체연구, 공동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공동연구의 경우는 괄호( )안에 관련기관을 기재

가-4. 허가・재허가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계획대비 실적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4-1. 허가・재허가시 계획

가-4-2. 이행실적

※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계획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유・경영 분리방안, 경영진 구성절차 개선,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계획, 경영감시기구(경영평가단, 사외이사제 등)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가-5. 직전 재허가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대비 실적

※ 직전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에 각 연도별 실적을 기재

나.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경영계획

나-1.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나-1-1.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의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과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나-1-2. 인력 운영계획

방송국명	구분		2011년 현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 인력운영 규모를 양식에 맞게 기재

나-1-3.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채용계획 (2012~2016)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나-2. 분야별 투자계획

나-2-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방송국명		%		%		%		%		%	
합 계											

나-2-2.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연도 /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국내전문교육		%		%		%		%		%	
국내교양교육		%		%		%		%		%	
해외교육		%		%		%		%		%	
기타		%		%		%		%		%	
합 계		%		%		%		%		%	

나-2-3. 직원 교육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2-4.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연구개발 총투자		%		%		%		%		%	

나-2-5. 연구개발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나-3.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o

나-4.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o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1. 재정능력

가. 재무구조(2008~201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0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한글파일로 작성 후, 엑셀파일로 변환 후에 파일로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 )에 작성

※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을 작성(단위 : 백만원)

※ 매출액은 매출액 총액 기재 후 방송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매출액을 구분하여 작성

※ 판매비와 관리비는 총액을 기재 후 그 중 인건비를 별도로 표기

※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연말+연초)÷2)×100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평균((연말+연초)÷2)×100

※ 2008년, 2009, 2010년 감사보고서 2부를 별도로 첨부

나. 추정재무제표(2011~2016 ; Excel 파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한글파일로 작성 후, 엑셀파일로 변환 후에 파일로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두 번째 줄로 ( )에 작성

※ 2011년 및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추정 재무상태를 작성하되, 작성요령은 '가.재무구조' 작성내용과 동일

※ 각 연도별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첨부

다. 주주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동방송사 구성주주간 채무보증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업 해당 여부 (○,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주식수	지분율	피보증사명	보증일	보증액	법인명 (성명)	대표자	국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 20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

①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②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대 구성주주 중 지분율 5% 이상 주주에게서는 <붙임>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 및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받아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을 확인해 기재한 후, 동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다. 주주현황'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주주사에 붙임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다만, 5대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함.

※ 기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③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을 표기

④외국인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외국인지분비율(%)을 기재

라. 주주 변동내역(2009.1.1 ~ 2011.5.31)

(단위 : 백만원)

회차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5%이상 보유 주주의 변동 내역을 양식에 맞게 작성.

마.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바. 수입현황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적재원			%			%			%		
광고수입			%			%			%		
협찬수입			%			%			%		
프로그램판매 수입			%			%			%		
기타사업수입			%			%			%		
총 계			%			%			%		

※ 수입 유형별(공적재원, 광고수입, 협찬수입, 프로그램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로 작성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2) 공적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지원, 기타 등을 구분하여 기재

(3) 광고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광고수입 현황을 작성하고, 해당법인의 방송국 중 재허가 대상이 아닌 기타 방송국의 광고수입 소계를 기재하여, 해당 작성양식의 총계가 '바.수입현황, (1)총괄'표와 동일해야 함.

⑷ 협찬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협찬수입 현황을 작성하고, 해당법인의 방송국 중 재허가 대상이 아닌 기타 방송국의 협찬수입 소계를 기재하여, 해당 작성양식의 총계가 '바.수입현황, ⑴총괄'과 동일해야 함.

⑸ 기타사업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 재허가 대상 방송국별 공적재원·광고수입·협찬수입·프로그램 판매수입 외에 문화행사, ARS, 교재판매 등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총액을 작성하고, 해당법인의 방송국 중 재허가 대상이 아닌 기타 방송국의 협찬수입 소계를 기재하여, 해당 작성양식의 총계가 '바.수입현황, ⑴총괄'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작성은 방송국별·수입내역별 세부내용 기재를 원칙으로 함

사. 추정수입

※ '바. 수입현황' 작성방법과 동일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공적재원		%		%		%
광고수입		%		%		%
가상・간접광고 수입		%		%		%
협찬수입		%		%		%
프로그램판매 수입		%		%		%
기타사업수입		%		%		%
총 계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공적재원		%		%		%	
광고수입		%		%		%	
가상・간접광고 수입		%		%		%	
협찬수입		%		%		%	
프로그램판매 수입		%		%		%	
기타사업수입		%		%		%	
총 계							

(2) **공적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		%		%
		%		%		%
총 계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		%		%	
		%		%		%	
총 계							

(3) 광고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5) 협찬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6) 기타사업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연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6-2. 기술적 능력

가.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송신관련 시설		%		%	
	기타 시설		%		%	
	합 계		%		%	

※ 양식에 맞게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을 작성한 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작성

나.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중 주요 세부내역(2009~2010)

(단위: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시설에 대한 주요 투자 세부내역을 작성(디지털전환 관련 투자내역은 비고란에 별도 표기)

다.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
	송신관련 시설		%		%		%
	기타 시설		%		%		%
	합계		%		%		%

구분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	
	송신관련 시설		%		%		%	
	기타 시설		%		%		%	
	합계		%		%		%	

※ '가.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작성방법과 동일

라. 방송시설(재허가 대상)에 대한 투자계획 중 주요 세부내역(2012~2016)

(단위: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시설에 대한 주요 투자계획 중 세부내역을 작성

마. 난시청 해소, 부가서비스 또는 신기술 도입·운영 계획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가. 방송발전 지원실적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허가・재허가시 방송발전 지원계획

가-2. 이행실적

※ 허가・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발전 지원계획 내용과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가-2-1. 방송발전기금 납부 내역

가-2-2. 방송발전기금 납부 이외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실적

나.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계획

※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계획을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하되, 연도별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1. 방송발전기금 납부 계획

나-2. 방송발전기금 납부 이외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

※ (예시)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사업계획(방송인력 교육기관설립, 방송관련 단체 지원, 학술사업 등), 기타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문화예술 관련 공익사업 및 단체 지원 등)

8.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가.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이행실적 (2008.1.1 ~ 2010.5.31)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2008년 이후 허가·재허가시 제출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

가-2. 이행실적

가-3.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 시청자 불만처리 주체(담당부서 등), 처리절차 등 상세하게 기술

가-4.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합계				

※ 본사·지역국을 구분하여 작성

가-5.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구분							기타	합계
2009년	건수							
	비율(%)							100%
2010년	건수							
	비율(%)							100%
2011년 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본사・지역국을 구분하여 작성

※ 연도별 시청자불만 상위 5대 사유의 건수 및 비율 기재

가-6.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구분							기타	합계
2009년	건수							
	비율(%)							100%
2010년	건수							
	비율(%)							100%
2011년 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본사・지역국을 구분하여 작성

※ 연도별 시청자불만 미처리건 상위 5대 사유의 건수・비율 기재

가-7 시청자 불만 전체내역

※ 2009. 1. 1 ~ 2011. 5. 31까지의 시청자불만처리 내역 전체를 작성

가-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종합편성방송사업자)

o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2009. 1. 1 ~ 2011. 5. 31까지의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별첨으로 제출

o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 **별첨으로 제출**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o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o 시청자위원회 위원 명단(2011년 5월말 현재)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o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

-

※ 종합편성방송사업자만 작성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은 양식에 맞게 작성
※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은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2012.1 ~ 2016.12)

나-1. 시청자 참여보장 등 권익실현 방안

※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 및 실현 계획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청자의 방송편성·제작 등 참여 보장 방안
※ 자체심의기구 운영 및 시청자불만처리시스템 개선방안 등

9. 준수사항 이행 등

가. 직전 허가·재허가시 조건 등 이행실적

방송국명	2008년 재허가시 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직전 허가·재허가 조건 등

가-2. 이행실적

※ 직전 허가·재허가시 조건부 재허가 사업자의 경우, 위원회 지적사항과 사업자 이행각서 제출내용 및 그 이행 내용, 이행 여부 등을 기재

10.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2009.1.1 ~ 2011.5.31)

(1) 대표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 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 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Ⅵ. 방송국 허가증 사본

o 재허가 신청 방송국의 허가증 사본 첨부

Ⅶ.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o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o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o 시설설치계획서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첨부문서 및 시설설치계획서의 경우 기존 허가·재허가시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이 있는 사업자에 한해 작성

Ⅷ. 주간기본편성표

o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o 2011년 5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첨부서류

o 감사보고서,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등 별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

Ⅴ. 첨부 : 신청서류 작성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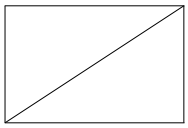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원 본

2011. 6. .

법 인 명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Ⅰ.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

Ⅱ.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

Ⅲ. 서약서 ·····

Ⅳ. 일반 현황 ·····

Ⅴ.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세부목차 추가) ·····

1. 행정처분현황 ·····

2. ooo ·····

Ⅵ. 방송국 허가증 사본 ·····

Ⅶ.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

Ⅷ. 주간기본편성표 ·····

Ⅸ. 첨부서류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4">방송국 재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90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법인명
(대표자명)</td><td></td><td>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소재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td><td colspan="3">(-)
(담당자: 전화: 팩스:
E-mail:)</td></tr>
<tr><td rowspan="4">허가사항</td><td>방송국의 명칭
(무선국종별)</td><td></td><td>방송사항
(사업종류)</td><td></td></tr>
<tr><td>허가번호</td><td></td><td>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td><td></td></tr>
<tr><td>방송구역</td><td colspan="3"></td></tr>
<tr><td>기타 허가의
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td><td>위반사항</td><td>위반횟수</td><td>시정조치</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td><td>사업수지견적</td><td>역무제공내용</td><td>수신자 불만처리</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5">「방송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및「전파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재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전파관리소장 귀하</td></tr>
<tr><td>구 분</td><td colspan="3">구비서류</td><td>수수료</td></tr>
<tr><td>신청인 제출서류</td><td colspan="3">1. 허가증 사본 1부
2. 방송사업 운영실적서 2부 (※ 방송보조국은 제외)
3.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별지 제 20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5.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제외)
6. 시설설치계획서 1부(※ 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td><td>「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td></tr>
<tr><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td colspan="3">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td><td></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1. 재허가 신청 현황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TV	DTV	소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2. 재허가 대상 방송국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 만료일	방송국 명칭	매체	소재지		방송 사항	방송구역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출력	비고
					연주소	송신소		일원	일부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재허가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6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Ⅳ. 일반현황

1. 개요

o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o

3. 연혁

o

4. 방송국 허가현황

사업자명	매체 구분													
	방송국							방송보조국						합계
	TV	FM	표준 FM	AM	단파	DTV	소계	TV 중계	FM 중계	표준 FM 중계	AM 중계	DTV 중계	소계	

5. 법인 현황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 colspan="5">세부 내역</td></tr>
<tr><td colspan="2" rowspan="2">방송법인 명칭</td><td>국문</td><td colspan="2"></td><td>(약칭)</td></tr>
<tr><td>영문</td><td colspan="2"></td><td>(약칭)</td></tr>
<tr><td colspan="2">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법인설립일자</td><td></td><td colspan="2">자본금(단위:억원)</td><td></td></tr>
<tr><td>구분</td><td>회사직책</td><td>성명</td><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주요약력</td></tr>
<tr><td>법인대표자</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편성책임자</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5">임원</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6">주주 현황</td><td>주주명</td><td>대표이사</td><td>참여지분(%)</td><td>회사자본금</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Ⅴ.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행정처분 현황 (2009.1.1 ~)

가. 시정명령(불이행) 현황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나. 심의제재 현황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0조제0항		

다.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 현황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과태료					

라.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사례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가.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이행실적 (2009. 1. 1 ~ 2011. 5. 31)

방송국명	허가 ·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허가 · 재허가시 공적책임 등 강화계획

가-2. 이행실적

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제고 실적 또는 훼손사례

다. 각종 수상실적

순번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라.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o 총괄표 (단위 : 분, %)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방송시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			%			
합계									

o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마. 자체심의제도 운영현황

마-1. 각 방송사업자별 자체심의제도 운영현황

마-2. 재허가 기간동안 자체심의 실적 : 별첨으로 제출

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실현계획 (2012.1.1~2016.12.31)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가. 편성기획 및 제작계획 이행내용 (2009.1.1 ~ 2011.5.31)

가-1.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 이행실적

허가·재허가신청시 제출한 편성의 기본방향	구체적 편성내용 (이행결과)	비고

가-2.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허가·재허가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계획	이행실적		비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가-3.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실적 및 계획

가-3-1.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 방송시간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가-3-2.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보도	시간(분)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국악, 교통 등)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주된방송 분야名	시간(분)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실적/계획 ×100
		비율(%)									
	기타 방송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가-3-3.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단위 : 천원)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비율		비용 (증감)	비율		비용 (증감)	비율		비용 (증감)
			계획	실적 (증감)		계획	실적 (증감)		계획	실적 (증감)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나.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편성계획 (2012. 1. 1 ~ 2016. 12 31)

나-1.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

나-2.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

방송편성일자	프로그램명	구분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을 양식에 맞게 기재

나-3. 방송분야별 · 제작주체별 편성계획

나-3-1. 자체편성 방송비율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나-3-2.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국악, 교통 등)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된방송 분야名( )	시간(분)					
		비율(%)					
	기타 방송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방송	시간(분)					
		비율(%)					

나-3-3.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단위 : 천원)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4. 지역사회 발전

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2009.1.1 ~ 2011.5.31)

o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5월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캠페인・행사・기부 등 지역사회 및 문화발전 기여 건수								
연도별 지원금								

o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참여내용	지원금	비고
합 계							

다. 지역사회 발전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2009.1.1 ~ 2011.5.31)

o 총괄표 (단위 : 분, %)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방송시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재허가방송국명		%		%		
합 계						

o 세부내역

구 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총 방송시간 합계					

라.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방안 및 실현계획

o

5. 경영실적 및 계획

가. 재허가 기간동안 경영실적

가-1.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가-1-1. 직급별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임원	일반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가-1-2.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 (2011.05.31. 기준)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합계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가-1-3. 내부 조직도(2011.5.31. 기준)

조직도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가-2. 허가・재허가시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대비 실적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2-1. 직전 허가·재허가시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가-2-2. 이행실적

가-2-3. 인력운영 실적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가-2-4. 재허가대상 방송국의 재허가 기간 신규채용현황

방송국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가-3. 분야별 투자실적

가-3-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09년			2010년			'09~'10년계		2011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			%				
합 계										

가-3-2.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연도 / 유형	2009년			2010년			'09~'10년계		2011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가-3-3.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가-3-4.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09년			2010년			'09~'10년계		2011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가-3-5. 연구개발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가-4. 허가・재허가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계획대비 실적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4-1. 허가・재허가시 계획

가-4-2. 이행실적

가-5. 직전 재허가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대비 실적

나.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경영계획

나-1.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나-1-1.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

나-1-2. 인력 운영계획

방송국명	구분		2011년 현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나-1-3.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채용계획 (2012~2016)

방송국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나-2. 분야별 투자계획

나-2-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방송국명		%		%		%		%		%	
합 계											

나-2-2.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연도 /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증감비율	금액
국내전문교육		%		%		%		%		%	
국내교양교육		%		%		%		%		%	
해외교육		%		%		%		%		%	
기타		%		%		%		%		%	
합 계		%		%		%		%		%	

나-2-3. 직원 교육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나-2-4.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연구개발 총투자		%		%		%		%		%	

나-2-5. 연구개발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나-3.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o

나-4.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o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1. 재정능력

가. 재무구조(2008~201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0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한글파일로 작성 후, 엑셀파일로 변환 후에 파일로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 )에 작성
※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을 작성(단위 : 백만원)
※ 매출액은 매출액 총액 기재 후 방송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매출액을 구분하여 작성
※ 판매비와 관리비는 총액을 기재 후 그 중 인건비를 별도로 표기
※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연말+연초)÷2)×100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평균((연말+연초)÷2)×100
※ 2008년, 2009, 2010년 감사보고서 2부를 별도로 첨부

나. 추정재무제표(2011~2016 ; Excel 파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다. 주주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동방송사 구성주주간 채무보증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업 해당 여부 (○,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주식수	지분율	피보증사명	보증일	보증액	법인명 (성명)	대표자	국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라. 주주 변동내역(2009.1.1 ~ 2011.5.31)

(단위 : 백만원)

회차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마.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바. 수입현황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적재원			%			%			%		
광고수입			%			%			%		
협찬수입			%			%			%		
프로그램판매 수입			%			%			%		
기타사업수입			%			%			%		
총 계			%			%			%		

(2) 공적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3) 광고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4) 협찬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5) 기타사업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사. 추정수입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공적재원		%		%		%
광고수입		%		%		%
가상・간접광고 수입		%		%		%
협찬수입		%		%		%
프로그램판매 수입		%		%		%
기타사업수입		%		%		%
총 계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공적재원		%		%		%	
광고수입		%		%		%	
가상・간접광고 수입		%		%		%	
협찬수입		%		%		%	
프로그램판매 수입		%		%		%	
기타사업수입		%		%		%	
총 계							

(2) 공적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		%		%
		%		%		%
총 계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		%		%	
		%		%		%	
총 계							

(3) 광고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5) 협찬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6) 기타사업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재허가방송국명 또는 수입내역명		%		%		%	
		%		%		%	
비대상방송국 소계		%		%		%	
합 계		%		%		%	

6-2. 기술적 능력

가.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송신관련 시설		%		%	
	기타 시설		%		%	
	합 계		%		%	

나.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중 주요 세부내역(2009~2010)

(단위: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다.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
	송신관련 시설		%		%		%
	기타 시설		%		%		%
	합계		%		%		%

구분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	
	송신관련 시설		%		%		%	
	기타 시설		%		%		%	
	합계		%		%		%	

라. 방송시설(재허가 대상)에 대한 투자계획 중 주요 세부내역(2012~2016) (단위: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마. 난시청 해소, 부가서비스 또는 신기술 도입·운영 계획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가. 방송발전 지원실적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허가・재허가시 방송발전 지원계획

가-2. 이행실적

가-2-1. 방송발전기금 납부 내역

가-2-2. 방송발전기금 납부 이외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실적

나.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계획

나-1. 방송발전기금 납부 계획

나-2. 방송발전기금 납부 이외 방송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

8.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가.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이행실적 (2008.1.1 ~ 2010.5.31)

방송국명	허가·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2008년 이후 허가·재허가시 제출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

가-2. 이행실적

가-3.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 시청자 불만처리 주체(담당부서 등), 처리절차 등 상세하게 기술

가-4.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합계				

가-5.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구분							기타	합계
2009년	건수							
	비율(%)							100%
2010년	건수							
	비율(%)							100%
2011년 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가-6.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구분							기타	합계
2009년	건수							
	비율(%)							100%
2010년	건수							
	비율(%)							100%
2011년 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가-7 시청자 불만 전체내역

※ 2009. 1. 1 ~ 2011. 5. 31까지의 시청자불만처리 내역 전체를 작성

가-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해당사업자만)

o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2009. 1. 1 ~ 2011. 5. 31까지의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별첨으로 제출

o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 **별첨으로 제출**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o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o 시청자위원회 위원 명단(2011년 5월말 현재)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o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

-

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2012.1 ~ 2016.12)

나-1. 시청자 참여보장 등 권익실현 방안

9. 준수사항 이행 등

가. 직전 허가·재허가시 조건 또는 권고사항 이행실적(이행각서 포함)

방송국명	직전 재허가시 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직전 허가·재허가 조건 또는 권고사항

가-2. 이행실적

10.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2009.1.1 ~ 2011.5.31)

(1) 대표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 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 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ooo주식회사의 2011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용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이 확인서의 내용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어 방송법제8조(소유제한등)를 위반할 경우에

① 본인(법인)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② ooo주식회사의 운용방송국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허가기간의 6개월 단축,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법인)은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이 확인서 작성일까지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40%(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3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법인)과 ooo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방송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지분율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본인(법인)과 ooo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2009년 1월 1월부터 2011년 5월31일까지의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11년 6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첨부 : 1. 주주현황(2011.5.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8.2.22, 2010.1.2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 주주현황 (2011.5.31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Ⅵ. 방송국 허가증 사본

Ⅶ.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방송국 재허가)

방송국명				최초허가일자			
허가번호				전파형식			
시설자명				송신주파수(㎒, ㎑)			
설치장소	송신소			공중선전력(㎾, W)		영상)주: 예비: 음상)주: 예비:	
	연주소			프로그램중계			
방송구역에 관한사항	방송구역						
	총가구수		가구	시청취가구수		가구 (%)	
경영사항	경영형태			구분	성명	대표자	출자금액
	자본금액		억원	주된 출자자			
	임원	직위	성명				
				다수 의결권자			
	최근 3년간의 사업수지내역 (세부내역별첨)	구분	년	년	년		
		수입	억원	억원	억원		
		지출	억원	억원	억원		
방송운영에 관한사항	방송사항(부가서비스사항)						
	운용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주간편성표 별첨)	방송사항		1주간당 시간비율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공급국명		1주간당 시간			
방송시설에 관한사항	구 분	송신장치	수신장치	송신공중선	수신공중선	공중선주	
	형식(구성)						
	제조사명						
	제조연월						
최근 3년간 시설변경에 관한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참고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제1면)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

<table>
<tr><td rowspan="14">①
송
신
부</td><td colspan="2">(1)송신방식</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2)장치구분</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3)정격출력</td><td colspan="2"></td><td>(4)실효복사전력</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4">희망 또는 발사
가능한 전파특성</td><td>(5)전파형식</td><td>(6)주파수</td><td colspan="2">(7)주파수범위</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8)발진방식</td><td>(9)변조방식</td><td colspan="2">(10)최고변조 주파수</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11)주파수변환 방식</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12)주파수편이억제장치</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13)공중선전력저하장치</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2">종단부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td><td>(14)명칭</td><td colspan="2">(15)개수</td><td colspan="2">(16)비고</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스퓨리어스발사
제거장치</td><td>(17)방식</td><td colspan="2">(18)제거대상
주파수</td><td colspan="2">(19)삽입손실</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송신장치제원</td><td>(20)제조자명</td><td colspan="2">(21)형식 또는
명칭</td><td colspan="2">(22)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②수신부
(주·예비
장치)</td><td colspan="2">(1)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td><td colspan="2">(2)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td><td colspan="3">(3)중간주파증폭부통과
대역폭(-6dB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4)제조자명</td><td colspan="2">(5)형식 또는 명칭</td><td colspan="3">(6)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③
송
신
공
중
선
계
등</td><td rowspan="2">공중선</td><td>(1)형식
및 구성</td><td>(2)
편파면</td><td>(3)
이득(dB)</td><td>(4)지상고(
m)</td><td>(5)해발
고(m)</td><td>(6)주복사각도 또는
판넬방향</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7)
전기적
틸트</td><td colspan="4"></td><td>(8)
방향별
틸트</td><td></td></tr>
<tr><td rowspan="2">급전선</td><td>(9)종별</td><td>(10)길이(m)</td><td colspan="2">(11)손실(dB)</td><td>(12)기타</td><td>(13)비고</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14)전체손실(dB)</td><td colspan="5"></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앞쪽)

<table>
<tr><td rowspan="4">④ 수신 공중 선계</td><td rowspan="2">공중선</td><td>(1)형식과 구성</td><td>(2)편파면</td><td>(3)이득 (dB)</td><td>(4)지상고 (m)</td><td>(5)해발고 (m)</td><td>(6)지향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급전선</td><td colspan="2">(7)종별</td><td colspan="2">(8)길이(m)</td><td colspan="2">(9)손실(dB)</td><td>(10)기타</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⑤ 연주 장치</td><td>(1)종류</td><td>(2)상용(대수)</td><td>(3)예비(대수)</td><td>(4)형식 또는 명칭</td><td colspan="2">(5)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⑥ 조장 장치</td><td>(1)종류</td><td>(2)상용(대수)</td><td>(3)예비(대수)</td><td>(4)형식 또는 명칭</td><td colspan="2">(5)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⑦ 전원 설비</td><td>구분</td><td>(1)종류</td><td>(2)용량</td><td>(3)전압</td><td>(4)상수</td><td>(5)비고</td></tr>
<tr><td>연주소</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송신소</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⑧ 접지 방식</td><td>(1)송신기</td><td colspan="2"></td><td>(2)접지저항</td><td colspan="2"></td></tr>
<tr><td>(3)안테나</td><td colspan="2"></td><td>(4)접지저항</td><td colspan="2"></td></tr>
<tr><td>(5)기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⑨ 공중 선주 및 급전 선주</td><td>구분</td><td>(1)종류</td><td>(2)높이</td><td>(3)기부 지상고</td><td>(4)공용하는 방송국</td><td>(5)주수</td></tr>
<tr><td>공중선주</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급전선주</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⑩ 부속 설비</td><td>의사공중선</td><td colspan="2">(1)종류</td><td colspan="2">(2)용량</td><td>(3)개수</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td><td colspan="3">(4)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5)경보 또는 감시항목</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자동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 포함)</td><td colspan="3">(6)제어장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7)제어항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⑪기타</td></tr>
<tr><td colspan="6">⑫첨부도면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공중선계 구성약도 (6) 송신공중선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td></tr>
</table>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제①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다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①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성" 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①란 (3): 중파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디지털TV방송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①란 (4):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①란 (11): 방송파 직접 수신중계방식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 제①란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7. 제①란 (14), (15), (16), (20), (21), (22) 및 제②란 (4), (5), (6) :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②란: 다른 방송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관하여 기재하고, (주장치, 예비장치)란에는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9. 제③란 (1) 내지 (7):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③란 (3):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공중선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단소수직공중선(Short Vertical Antenna)을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단소수직공중선: 완전도체면상에 설치된 1/4파장보다도 매우 짧고 손실이 없는 접지 안테나
11. 제③란 (4) 및 (5): 공중선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길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③란 (6): 지향성공중선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④란: 송신공중선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 제⑤란: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어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5. 제⑥란: 제한증폭시·조정증폭기·전치증폭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 발생장치·혼합증폭기·안정증폭기·스테레오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⑦란 (5):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 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라디얼스일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공중선주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구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기부지상고는 구축물(건물)이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⑫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⑫란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⑫란 (2): 국사·부속사·공중선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공중선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제⑫란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⑫란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제⑫란 (5)
    - 공중선주 공중선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공중선복사체의 형상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공중선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⑫란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o **시설설치계획서** : 연주소 평면도, 연주소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차의 경우) 등 시설설치계획서

Ⅷ. 주간기본편성표

첨부서류

[부록 2]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 - 58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8.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5개 방송국)

- (주)경인방송(경인FM), (주)제주방송(제주FM), (재)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제주FM), (재)부산영어방송재단(부산영어FM), (재)광주영어방송재단(광주영어FM)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분당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공주공동체라디오FM)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3. 제출기한

○ 2011. 8. 18.(목) ~ 2011. 9. 14.(수)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2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750-2434, 2436)

[부록 3]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7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재허가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방송국	허가만료일	심사결과
㈜경인방송	경인방송iTVFM방송국	2016.12.31.	재허가
㈜제주방송	JIBS제주FM방송국	2013.12.31.	재허가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제주FM방송국	2016.12.31.	재허가
(재)광주영어방송	광주영어FM방송국	2016.12.31.	재허가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FM방송국	2016.12.31.	재허가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o 접수기간 : 2011. 8. 18. ~ 9. 14.

o 접수결과 : 없음

o 시청자의견 반영여부

-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하였음.

2011. 12. 1.

방 송 통 신 위 원 회